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 2005. 1. 5. 개정 2008. 2. 13.
제정 2009. 2. 2. 개정 2009. 11. 23.
제정 2011. 2. 25. 개정 2012. 4. 19.
개정 2012. 12. 7. 개정 2015.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발명을 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기술 개발 촉진과 발명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대학교의 지식재산권의 관리, 실시보상 및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2. “교직원 등”이란, 이 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수, 직원, 조교, 연구원 및 그 밖의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3. “직무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가. 이 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대학 또는 대학 소유의 재단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나. 법률,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이 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과 제3자와의 연구 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4.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나. 제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발명

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통지의무 기한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6. “외부발명자”란, 이 대학교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7. “지식재산권”이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신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8. “실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2. 25)

가. 물건의 발명인 때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때는 “나” 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9. “실시보상”이란, 이 대학교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함으로써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 실시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10. ‘슬라이딩 스케일’이란, 기술료의 금액 범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분배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 2. 2, 개정 2011. 2. 25)

11.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2. 25)

12. '기술자문'이란 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해 문서의 형태로 자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전단계로 자문으로도 해결 가능한 기술에 대해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2. 25)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이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13)

② 교직원 등이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용역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때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13)

제5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지식재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 서식)
3. 발명의내용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4. 발명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각자의 지분내역
5.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6. 프로그램창작성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신설 2008. 2. 13)

②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는 의견을 첨부하여 산학협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제6조 (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제3조 제4호 가목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3)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그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출원 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②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08. 2. 13)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④ 발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권리 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은 그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단,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08. 2. 13)

제8조 (출원) ①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발명자로부터 권리 승계를 받은 발명은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출원을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는 출원, 등록, 유지,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지분에 한하여 부담하며 부득이 한 때는 발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으로 규정된 발명을 출원하는 때는 이 대학교 또는 그 관련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는 당해 발명의 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⑤ 외국에 출원하는 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에게 출원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출원을 하거나 출원을 유보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제9조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신의 명의로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특허권 등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은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할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1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13)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은 지식재산관리센터장과 이 대학교 소속 교직원, 기술심의회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외부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외 출원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 25)

제14조 (의사결정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기술 실시 계약

제15조 (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당해 발명자 및 실시예정자와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단,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때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9. 11. 23)

제16조 (계약의뢰) 발명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실시예정자와 사전 협의 결과 해당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식재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전심의)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제16조에 의한 계약의뢰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추인 받을 수 있다.

제18조 (계약체결)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조건을 설정한 후 산학협력단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술료) 기술료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08. 2. 13)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 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3)

제20조 (특례)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술료의 조정을 요청한 때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는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때 (개정 2011. 2. 25)

③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로 하여금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의 보안조치 및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협력단장의 서면동의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실시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기술 실시자와 기술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으로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없다.

제 5장 발명 보상과 기술료의 분배

제23조 (등록보상금) 제8조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이 등록되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 국내 50만원, 국외 200만원

2. 실용신안 : 국내 30만원, 국외 100만원으로 하되, 2006. 10. 1. 전에 등록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2006.

3. 3. 개정전 실용신안법(법률 제7555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결과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것에 한함 (개정 2008. 2. 13)

3. 디자인(상표) : 국내 20만원, 국외 70만원

4. 특허 협력조약(PCT)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등록 : 100만원

제24조 (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액 중에서 그 총 수입액의 5%를 기술이전기여자에게 지급한 후 출원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에 의해 별표1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술료의 수입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출원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9. 2. 2, 2009. 11. 23)

②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③ 기술이전 기여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제12호서식)을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지급에 대한 가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3, 2009. 11. 23)

제25조 (발명자의 보상금 지분) ① 발명자의 보상금 지분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발명자는 지분 신고의 잘못으로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때는 이를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제26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퇴직 및 사망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한 때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 변경시에는 1월 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발명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는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 발명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동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것인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6장 이의신청 (장신설 2008. 2. 13)

제27조의 2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2. 13)

1. 제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 하지 않겠다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

2.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을 때.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출원, 설정, 등록, 처분 또는 실시 허락에 있어서 이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 2. 13)

② 발명자와 발명과 관계된 사람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이 대학교 및 지식재산관리센터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위원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29조의 2(퇴직 등 후의 취급)퇴직한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8. 2. 13)

제29조의 3(출원유보시의 보상)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3)

제30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1. 23)

부 칙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발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출원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제3조 제3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하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장이 승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제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8.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료 분배비율(규정제24조제1항) (개정 2009. 2. 2, 2011 .2. 25, 2012. 12. 07.)

(단위:%)

구 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발명자	산 학 협력단	발명자	산 학 협력단
1.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 및 등록비 부담	70	30	60	40
2.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비 부담	80	20	70	30
3. 산학협력단이 특허 유지를 포기하고 발명자가 유지비 부담	90	10	80	20
4. 연구비 지원기관과 발명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발명자 수익 기준)	90	10	80	20
5. 특허권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 임대	80	20	70	30
6. (삭제 2012. 12. 07)				
7. 자 문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자문료의 15%를 징수한다. ○ 자문결과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기술료가 발생하는 때는 별표1의 제4호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연구 계약서(표준연구계약서 “예”)

연구과제명 :

계약당사자 :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위탁자”라고 한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이하“단장”이라고 한다)

연구책임자 :

순천대학교 교수 OOO(이하“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이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이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①이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 가운데 직접연구비는 금 원정(₩)으로 한다.

②이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연구경비는 직접연구비의 ()%로 한다.

③연구비 총액은 금 원정(₩)으로서,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2회로 나누어서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1차 경비(50%)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2차 경비(50%) : 금. 원정(₩)
(년 월 일)

제4조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이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단장을 경유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계약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

제공 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위탁자, 단장,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없이 이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연구책임자는 위탁자가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 창작된 발명의 귀속) ①이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배치설계(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는 위탁자와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공동귀속(또는 산학협력단에 단독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 설정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실시료 등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하계 될 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

- ▶ 특허출원, 등록, 유지비에 관한 부담비율
- ▶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
- ▶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여의 조건
- ▶ 분쟁발생시의 처리방향

제8조 (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①이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배치설계는 위탁자와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공동소유(또는 산학협력단 단독소유)한다.

제9조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제10조 (명칭 사용) 위탁자는 사전 승인 없이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대외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단장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위탁자와 단장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배상의 의무를 진다.

②위탁자는 단장, 연구책임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때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순천대학교(또는 산학협력단)와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단장과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탁자가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때는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 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단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단장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위탁자와 단장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첨 부 : 연구 계획서 1부

년 월 일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주소 :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장 000 (인)

주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413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input type="checkbox"/> 국내출원	<input type="checkbox"/> 특허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상표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등록 <input type="checkbox"/> 저작권 <input type="checkbox"/>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input type="checkbox"/> 우선권주장출원(출원일: /출원번호:)			
<input type="checkbox"/> 국제출원	<input type="checkbox"/> PCT출원 <input type="checkbox"/> 개별국출원() 국내 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출원비출처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input type="checkbox"/> 연구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 속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전시) 발표일 :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 <input type="checkbox"/> 자유발명			
발명의 현단계	<input type="checkbox"/> ①아이디어단계 <input type="checkbox"/> ②연구개발진행중 <input type="checkbox"/> ③연구개발완료 <input type="checkbox"/> ④시제품제작중 <input type="checkbox"/>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input type="checkbox"/> YES(연구실, 산학협력단)		<input type="checkbox"/>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논문,시장정보) 키워드				
위의 발명을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권리승계 합의서					
발명의 명 칭	한글: 영문: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양수인	성명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주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 413			
<p>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p>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8. 2. 13, 2012. 4. 19)

발명의 내용 설명서						
관리번호				대리인		
발명의 명칭					IPC분류번호	
기술개발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지분율
주요내용				기대효과		
적용분야				시장성		
기술의특징				기업화전망		
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정보산업 <input type="checkbox"/> 기계설비 <input type="checkbox"/> 기초원천 <input type="checkbox"/> 정밀화학 <input type="checkbox"/> 생명과학 <input type="checkbox"/> 원자력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항공우주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소재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교통 <input type="checkbox"/> 자원 <input type="checkbox"/> 해양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제품개발 <input type="checkbox"/> 신공정개발 <input type="checkbox"/> 기존제품개선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정개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련연구	과제 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기간				*기여율	
	연구비	총액 :	(정부 :	원/ 민간 :	원)	

기여율란은 1개 과제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의 과제인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해당과제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발명 설명서(명세서) -1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발명 설명서(명세서) -2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구성】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나) 기능 및 작용

다) 실시예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범위

4.1 청구항1

4.2 청구항2

4.3 청구항3

선행기술 조사서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 특허 등) 조사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제출자(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2. 선행기술과의 대비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3.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발명의 특징	

프로그램창작신고서

프로그램의
명칭

창 작 자	순위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관 련 연구과제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상기의 프로그램 창작물을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등록의뢰(양도)하오니 송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첨부 : 프로그램등록신청서 및 프로그램의 개요 등 관련서류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08. 2. 13)

통지일자	
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직무발명 여부	
2. 산학협력단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출원 여부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p>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p>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미출원 이유			
<p>20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p>			
첨부	출원명세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주 소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제7조제4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24조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7조의 2에 의거 20 년 월 일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7조의 2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 사항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기술실시 계약체결 의뢰서

수신 : 산학협력단장

제목 : 기술실시 계약체결 의뢰

다음과 같이 기술실시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오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체결 대상 기술명 :
2. 관련연구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기여율(%)

3. 실시 예정자 :
4. 실시 예정자와 협의내용(협의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기술실시 계약 체결 관련 자료 1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기술실시 계약체결 관련자료

1. 기술의 내용

가. 기술내용 :

나. 기술특성(유사한 타 기술과의 차이점 위주로 기재)

2. 기술활용 결과의 형태(재료생산, 완제품생산, 일부 공정대체, 생산성 향상 등)

3. 기술활용 결과의 매출계획

품명	용도	생산규모	단위	단가	비고

품명	계획 매출량(단위 : 개)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4.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의 현황 및 이관 여부

5. 기술관련 대학의 특허현황(출원, 등록)

6. 기술의 Life Cycle

7. 기술활용 결과의 시장현황(현재 국내 총수요량, 공급량, 공급업체 및 점유가능율 등)

8. 연구종료일 이후 생산개시일 까지 대학이 제공할 내용

형 태	내 용
1. 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2. 실시자측 요원에 대한 기술 교육	
3. 전문가 지원(Pilot plant Test 지원)	
4. 관련 장비 이관(기자재 시설 등)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24조 관련)

1. 기술이전 내역

기술계약명	
기술이전 업체명 / 담당자	
기술이전 책임자(소속/성명)	
계약일/ 계약기간/ 기술료	
기술이전 담당자	

2.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

항 목		내 용			비 고
		성명	소속	기여도(%)	
기술이전 기여자 명단					기술료 총수입액의 5%
기여한 내용		* 별도 용지에 구체적으로 작성			
검토의견 (지원여부)	심의위원회	구분	可	不	기타의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명	()명	

상기 내역과 같이 기술이전 경과를 보고하며, 이에 따른
기여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09. . . .

OOO